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4가단232732 판결 [사용료 및 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0. 25.

판결 선고2024. 11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36,858,089원의 한도 내에서 73,471,729원 및 그 중 73,433,608원에 대하여 2024. 2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채권자는 원고로,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, 피고 D 주식회사의
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E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)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배온실

별지